



학부모 안내서

1973년 재활법 504조항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504 조항이란 무엇입니까?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1973년 재활법 504조항)은 장애를 가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 정부법입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원조를 받는 모든 기관의 장애로 말미암은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은 504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Regulation ACG-RB,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는 학생을 위한 504조항 MCPS 절차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온라인에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504 조항에서 말하는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한 가지 이상의 실제적 제한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504 조항에서의 주요 생활 활동이란, "자신 돌보기, 설명에 다른 업무수행,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배우기, 일하기, 서기, 들기, 몸굽히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와 같은 기능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장애에 따른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이 이에 적용됩니다.

장애의 진단만으로 504 조항의 적격성이 학생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후견인 또는 교사는 학생의 학교에 504 조항 팀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팀에는 학교 교직원, 기타 전문가, 학부모/후견인과 함께 해당할 경우, 학생이 포함됩니다. 팀은 여러 정보 서류(예: 성적표, 학생관찰, 의료 기록 및 그 외의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록)를 검토하고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504 조항 요건의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팀은 학생의 장애가 교육적 프로그램과 활동에 균등한 기회를 받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수행 능력과 해당 학생의 능력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장애 학생과 비교할 고려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과물을 완수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인 학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교육 프로그램에 눈에 띄게 지장을 주는 행동을 자주 할 경우.
- 학생이 도움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04 조항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504 조항에 따른 조정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학생이 학교에서 상용하기 위해 받게 되는 계획을 504 조항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손상에 대해, 손상에 의해 방해받는 기본적 일상활동에 대해, 학생의 필요에 맞는 편의에 대해, 그리고 편의를 제공할 담당자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504 조항 계획의 개발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학부모/후견인은 504 조항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계획 개발에 참여합니다. 적절한 경우, 학생을 포함합니다.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학생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 계획에 대해 알려주고 매해 정기적 또는 필요한 경우의 재검토를 권장합니다. MCPS는 504 조항 계획을 위한 온라인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란 무엇입니까?

학부모/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학생의 장애에 따라 일어나는 차별 없이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학생의 신분 증명과 평가 그리고/또는 추천되는 편의 제공에 관한 통보를 받을 권리.
-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 이에는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상황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 학생이 가능한 한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학교 프로그램과 학교가 후원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권리.
- 학생의 교육기록을 살펴보고 이 기록의 복사본을 받을 권리.
- 학생을 잘 아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 및 평가자료와 프로그램의 선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식별, 평가, 배치/프로그램 결정을 받는 권리.
- 식별, 평가, 배치/프로그램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권리.

MCPS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주소: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은 MCPS의 504 조항 이행 여부의 감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학부모/후견인은 504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해 504 담당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MCPS 권리 절차 보호에 관한 안내: 1973년 재활법 504 조항(Due Process Safeguards Information: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안내 사본에는 504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적혀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504 조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504 조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다음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504 조항 담당자(Section 504 coordinator)	
MCPS 504 조항 담당자(Section 504 coordinator)	301-517-5864
MCPS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pecial-education/compliance/section-504.aspx	301-517-5864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http://wdcrobcolp01.ed.gov/CFAPPS/OCR/contactus.cfm	215-656-8541 1-800-421-3481

MCPS 차별 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조국,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부모 상태, 결혼상태, 나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 가난,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관련으로서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오랫동안 우리가 심여를 기울여 만들어 육성하고 향상시켜 온, 모두에 대한 형평, 포용, 수용에 관한 우리의 노력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차별의 일부 예에는 증오적 행동, 폭력, 무감각, 괴롭힘, 불링/왕따, 무례 또는 보복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공평성이란, 묵시적인 편견, 정당화할 수 없는 다른 관습,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교육적 편견을 발견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OCOO-EmployeeEngagement@mcpsmd.org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162 Rockville, MD 20850 301-279-3444 OSSA-SchoolAdministration@mcpsmd.org

*장애 학생을 위한 조정에 관한 질문, 불평 또는 요청은 Office of Special Education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수퍼바이저 (전화:301-517-5864)로 문의합니다. 교직원을 위한 조정 또는 조절에 관한 질문은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240-740-2888로 문의합니다. 추가로 차별에 관한 불평사항은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altimore Field Office, City Crescent Bldg., 10 S. Howard Street, Third Floor,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t. of Education Bld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전화 301-740-1800, 301-637-2958 (VP) 또는 Interpreting_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Rockville, Maryland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용으로 Department of Materials Management 제작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Unit 번역
 0122.18ct • Graphics & Publishing Services 편집 • 7/17 • NP

